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7.(수) 11:00 < 6.8.(목) 조간 > 배포 2023. 6. 7.(수)

시험인증 부정행위, 이렇게 뿌리 뽑는다

- 100여 명 업계관계자 대상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안내
- 부정행위 조사현황 및 적발 사례 등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6월 7일(수)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이하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제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신고조사센터를 운영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4.8.)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 개소('21.5.18)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 [붙임1]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요'의 설명회 세부일정 참고

진종욱 국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 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형민 (043-870-5480)
		담당자	연구사	허아영 (043-870-548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요

□ 설명회 개요

○ (일 시) 2023. 6. 7.(수) 14:00~16:30

○ (장 소)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1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 (참석자) 국가기술표준원장,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시험인증기관, 성적서 수요처, 제조·유통업체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및 시험인증산업 동향 등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세부일정 >

시간	내 용	비고
13:30~14:00	▪ 참석자 접수	
14:00~14:05	▪ 개회 및 모두 발언	국가기술표준원장
설명회 발표		
14:05~14:20 (15분)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소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4:20~14:35 (15분)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4:35~14:55 (20분)	▪ 부정성적서 조사현황 및 사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4:55~15:10 (15분)	▪ 휴식 시간	-
15:10~15:25 (15분)	▪ 해외인증지원단 활동 계획	국가기술표준원
15:25~15:45 (20분)	▪ 시험인증산업 동향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15:45~16:15 (30분)	▪ KOLAS 인정제도 동향	국가기술표준원
16:15~16:30 (15분)	▪ 질의응답	-

붙임 2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개요**

□ 배경 및 목적

○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21.4.8.)

-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를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을 차단

□ 주요 내용

○ **(시험인증 부정행위)** 적합성평가관리법 제5조제3항과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적합성평가관리법에 따른 시험인증 부정행위 >

구분	내용	벌칙
제5조제3항 위반	- 평가결과를 고의로 조작하여 성적서를 발급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제5항 위반	- 성적서를 위조·변조 - 부정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활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행위조사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21.5.18.)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실시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체계 >



붙임 3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 및 주요 조사 사례**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유선 등을 통해 민원 신고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홈페이지 이용 시 간편하게 신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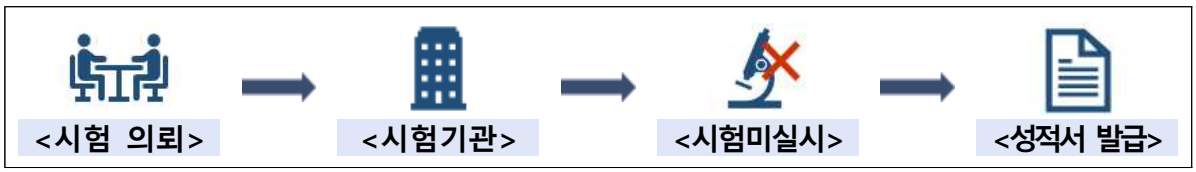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신고창구>

◈ **(홈페이지)** www.tacci.kr(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창구 이용 가능)
◈ **(전화번호)** 1833-5577(전국 대표번호)
◈ **(이메일)** tacci@kips.kr

□ 부정성적서 조사 사례

○ **(시험 미실시)** 적합성평가사업자인 B는 실제 제품이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일부 시험항목에 대해 미평가 후 결과를 적합으로 기재하여 성적서를 발급함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행위) 형사고발 조치



○ **(성적서 위·변조)** 유통업체 C사는 발급받은 유통 제품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결과값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시험성적서의 결과값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이를 납품업체 등에 제출하는데 사용함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변조한 행위) 형사고발 조치

